

[별첨 1]

임용결격사유(공단 인사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자

서류전형 평가항목별 참고사항

❖ 자격증

- 자격증은 최대 2개까지 인정하나 최대 25점까지만 적용
- 동일종류 자격증은 상위자격증만 인정
- 모든 자격증은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레벨에 합격한 경우에만 인정
(예시) 세무회계 2급, 세무회계 1급 자격증 제출시 세무회계 1급만 인정

배점	해당 자격증		
	자금운용	회계·세무	기타
25점	CFA(공인재무분석사) CAIA(국제대체투자분석사) 국제FRM(국제재무위험관리사)	회계사, 세무사 AICPA(미국공인회계사) CMA(공인관리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20점	국내FRM 투자자산운용사 국제투자분석사(K-CIIA) 금융투자분석사	전산세무1급 재경관리사	사회복지사 1급
15점	증권투자권유대행인 (舊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권유대행인 (舊펀드투자상담사)	전산세무 2급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1급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1급
10점	자산관리사	회계관리 2급 세무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직업상담사 2급 CS Leader(관리사)
5점	-	전산회계 2급 세무회계 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어학

- 국내 정기시험에 한하여 TOEIC, TOEFL(IBT), TEPS, New TEPS, JPT만 인정
- 서로 다른 어학성적 2종 이상 소지한 경우 배점이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인정)
- 만점기준

구분	TOEIC	TOEFL(IBT)	TEPS	New TEPS	JPT
점수	880이상	103이상	742이상	415이상	880이상

모집지역별 근무지 주소

모집지역		근무지 주소
제주	제주본사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울	서울 전부서 (재해보상실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서울상록회관
대전	공무원연금 콜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11 상가 2층
세종	세종지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빌딩 7층
부산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4(범일동 828-9번지) 천우빌딩 12층
대구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대봉1동 60-10번지) 센트로팰리스 108동 (오피스텔) 3층
광주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농성동 417-40)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1층
전북	전북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276 전주상공회의소 3층

[별첨 4]

직무기술서

○ 일반사무직 (NCS : 경영회계관리직)

채용직무	일반 사무직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직무)
			02.경영회계사무	01.기획사무	01.경영기획 03.마케팅	01.경영기획 02.고객관리
			02.총무·인사	02.인사·조직	01.인사 02.노무관리	
			03.재무·회계	01.재무	01.예산 02.자금	
				02.회계	01.회계·감사 02.세무	
해당직무 주요사업	○ 재무예산관리, 회계관리, 리스크 관리, 공단감사, 인사노무, 조직대외협력, 직원교육, 경영지원, 국제업무* 등 * 해외 연금제도 연구, 국제관계 등 외국어능력이 요구되는 업무임.					
직무능력 내용	※ 아래 직무능력 내용은 입사 후 직무수행의 내용과 범위를 제시한 것임. ○ (경영기획) 경영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 (고객관리) 자산관리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고객의 상황 변화와 니즈를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고객 관계를 강화 ○ (인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조사 및 직무 분석을 통해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조직의 인사제도를 개선 및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 ○ (노무관리)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조합)간의 협력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경영활동으로 노사관계 계획, 단체교섭, 노동쟁의 대응, 노사협의회 운영, 근로자 고충처리, 노사관계 개선 등을 수행 ○ (예산) 조직이 목표로 하는 경영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미래의 경영활동을 계량화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통제 ○ (자금) 예산계획에 따라 기업의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 자금의 계획 수립, 조달, 운용을 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관리 및 성과를 평가 ○ (회계·감사) 기업 및 조직 내·외부에 있는 의사결정자들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공된 회계정보의 적정성을 파악 ○ (세무) 기업 활동을 위하여 주어진 세법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조세전략을 포함하고 정확한 과세소득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당국에 신고·납부 ○ (법무) 연금업무 및 기금증식, 연금지급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민법·형법과 헌법의 해석 및 적용 ○ (행정) 연금지급 관리,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처리와 행정관리 등 제반 행정법규의 해석 및 적용 ○ (연금) 연금 및 재해보상제도 조사, 연구 및 중장기 재정추계 등 연금정책 지원 업무 수행 ※ 법무·행정·연금은 NCS와 무관하며, 공무원연금공단 고유 업무와 관련된 직무내용임.					
일반요건	연령	제한 없음				
	성별	제한 없음				
교육요건	학력	제한 없음				
	전공	제한 없음				
자격요건	필수자격	해당 없음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기획) 재무예산관리 ○ (고객관리) 고객관계 관리 방법 ○ (인사) 직무분석, 적정인력산정법, 인력육성체계 ○ (노무관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법 ○ (자금)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재무 위험관리 ○ (회계·감사) 기업 실무에 적용되는 회계 관련 규정, 재무제표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기획) 예산관리 적용기술 ○ (고객관리) 고객분석 능력 ○ (인사) 인력운영의 효율성 분석 ○ (예산) 세부예산 수립기준 교육 능력 ○ (자금) 여유자금 운영기술 ○ (세무) 세무프로세스 활용능력, 세무신고 관련 보고서 작성능력
필요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기획)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대한 전략적 사고 ○ (고객관리) 내외부 부서의 요청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지, 고객 분석 목표에 부합된 결과 도출 의지 ○ (인사) 객관적 태도 ○ (예산) 이견 조율을 위한 설득적 자세, 지침 및 규정 준수, 종합적 시각으로 보려는 자세 ○ (자금) 금융시장과 상품에 대한 분석력 ○ (세무) 수리적 정확도를 기하려는 자세, 각 세법의 신고절차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와 학습 태도
직업 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참고사이트	www.ncs.go.kr